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연월일	2016. 2. .
발 의 자	양진오 의원 외 8명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진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 연월일: 2016. 2.

발 의 자: 양진오, 권기만, 김복자
안장환, 안주찬, 윤영철
정근수, 정하영, 한성희

1. 제안이유

-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여 행정집행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와 견제를 실시하고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회 운영을 도모코자 함.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에 따른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자구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조정(안 제2조 제2항)
 - 제2차 정례회 ⇒ 제1차 정례회
-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규정 삭제에 따른 상위법 명칭 수정(안 제5조 제1항 제5호)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사무 규정 중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 삭제(안 제6조 제2항)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본문 중 “제2차”를 “제1차”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본회”를 “다만, 본회의”로 한다.

제3조제5항 단서 중 “다만,본회의”를 “다만, 본회의”로, “본회”를 “본회의”로 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구미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출연 법인 중 구미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구미시가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중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를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와”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구미시의회회의규칙”을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6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감사) ① (생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본회에서 감사를 행할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② ----- 제1차 ----- ----- ----- ----- ----- ----- . 다만, 본회의----- ----- -----.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조사) ① ~ ④ (생략)	제3조(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를 행할 경우에는 본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⑤ ----- ----- ----- ----- ----- ----- <u>다만, 본회의</u>----- ----- <u>본회의</u>----- -----.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생략) ② 제1항의 사무는 <u>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u>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현행과 같음) <u><삭제></u>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② (생략)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u>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들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u>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④ (생략)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u>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구미시의 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u>	제16조(징계) -----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의 심의·의결에 관여한 경우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86조-----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징계의 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 ☞ <2014. 3. 24 삭제>

제77조의3(설립)

-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식회사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추가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복지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사업성, 출자·출연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것으로 본다.